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27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최민희 · 김 현 · 황정아
노종면 · 김우영 · 이해민
한민수 · 박민규 · 서영교
권향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2023년 1,277건 대비 48% 가량 급증했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도 307건에 달해 보안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해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적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 등은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기업 등의 실제 침해·유출사고와 조치내역, 정보보호·사고대응 역량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과 더불어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정보보호 관련 인증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및 조치 내역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현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공시연도의 다음 공시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u>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u>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u><신 설></u>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 ----- ----- ----- ----- ----- ----- <u>다음 각 호의</u> ----- ----- ----- ----- ----- ----- ----- ----- ----- ----- <u>1.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u> <u>(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 ⑤ (생 략)	<u>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 다)</u> <u>2. 정보보호 관련 인증</u> <u>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 사고의 발생 및 조치 내역</u> <u>4.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에 따른 개인정보 분실·도난 · 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보호 현황</u> ② ~ ⑤ (현행과 같음)
---	---